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2327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조상호 의원의 9명
- 나. 발의일 : 2021. 4. 2.
- 다. 회부일 : 2021. 4.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그동안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해 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칙과 조례로 상향 입법하여 서울시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 강화 및 중요성 인식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또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확대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조례의 체계에 맞춰 조항의 위치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 제21조의9 신설).
- 비밀유지 의무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누설 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또한 조항의 순서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구성과 체계를 정비하였음.

2 주요사항 검토

-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안 제21조의2~안 제21조의9 신설)
 - 개정안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6조의2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1)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기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시민인권 침해 권리구제 절차에 포함되어 운영됨.

- ① (여성권익담당관 및 인권담당관) 사건 신고접수
- ②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 ③ (인권담당관)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 ④ (감사위원회) 조사과의 재조사 및 인사과 징계 청구
- ⑤ (인사과) 최종 징계 의결

<사건 처리 절차 비교>

기존 평균 8~12개월 소요	신고접수 (여성권익인권담당관) -	조사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1개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담당관) 2개월 *의신청 기간 포함	조사 및 징계요구 (감사위원회) 3~4개월	징계의결 (인사과) 2~3개월
개정 평균 4~5개월 소요	신고접수 (여성권익담당관) -	조사 (여성권익담당관) *조사협의체 구성 20일	고충심의위원회 (여성권익담당관) 14일	징계요구 (감사위원회) 45일	징계의결 (인사과) 1~2개월
* 사건 조사는 조사협의체(여성권익담당관+조사담당관)를 구성·운영					

○ 이처럼 기존의 사건 처리 절차는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감사위원회, 인사과까지 4개의 부서가 분절적·중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평균 8~12개월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영할 수 있다.

과정에서 정보유출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피해자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는 바, 신고접수부터 조사, 심의, 피해자 보호까지 일원화하여 여성권익담당관에서 전담처리하여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기밀유지 및 2차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위원회 설치·운영 외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에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제로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서울시 행정규칙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시행 2021. 4. 6.] [서울특별시규칙 제 4418호, 2021. 4. 6., 제정]으로 상향입법하여 규정하였음.

※ 소방직의 경우, 현재 별도의 예방 지침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건 처리를 해왔으나, 동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성희롱 사건의 판단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됨.

○ 개정안(안 제21조의2)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①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피해 포함), ②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③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21조의2(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와 소속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u>②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u> <u>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u> <u>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u> <u>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u>

- 위원회는 규칙 제정 전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예방지침’)”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상향입법하여 조례에 따른 서울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전담 심의기구로 확대·강화하려는 것임.

<위원회의 심의 사항>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제2항)	개 정 안 (제21조의2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사항 적정이행 여부</u> 2. <u>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u> 3. <u>피해자 보호 및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결정</u> 4. <u>그 밖에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u> 2. <u>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u> 3. <u>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u> 4. <u>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u>

○ 또한, 시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의 판단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공식·비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인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우려가 있는 바, 안 제21조의10제6항²⁾에서 시장이 행위자인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

2) 개정안 제21조의10(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이관하여야 한다.

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제2항에서 인원을 6명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존 예방지침에 따른 위원회와는 달리 사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지침과 기존 위원회를 준용하여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으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본문³⁾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제1항⁴⁾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장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p>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3조)</p>	<p>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p>	<p>개 정 안 (안 제21조의3)</p>
<p><u>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u></p> <p><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은 ○○○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u></p>	<p><u>제13조(위원회 구성)</u></p> <p><u>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행정1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u>제21조의3(고충심의위원회 구성) ①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인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인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들이 호선한다.</u></p>
<p><u>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u></p>	<p><u>④ 내부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과 3인 이하의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u></p> <p><u>⑤ 외부위원은 성희</u></p>	<p><u>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u></p>

<p><u>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u></p>	<p><u>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③ 위원</u>의 구성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p>	<p><u>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④ 위원</u>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과반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p>
<p><u>⑤ 위원회</u>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p>	<p><u>⑥ 위원회</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이 되며, 필요 시 구제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자가 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다.</p>	<p><u>⑤ 고충심의위원회</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권익담당관이 된다.</p>

-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조례)」 제7조5)에 따라 위원의 임기(안 제21조의4),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21조의5), 위원장의 직무내용(안 제21조의6), 위원회 회의 운영 사항(안 제21조의7),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21조의8), 5년의 위원회 존속기한(부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이 당사자인 피해자(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와 행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5조를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조치 이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9(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한편 위원회 관련 규정은 시장의 조직편성권과 인사권에 해당하는 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 의견을 제출한 바, 위원회 설치·구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확대(안 제21조의10)

-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위원회 위원 등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 당사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의10(피해자등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④ ----- -----

<p>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u>조사과정</u>에 참여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u>처리</u>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u>조사 과정</u>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생략)</p> <p>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에는 사건을 인지한 즉시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u>조사와 심의</u>를 이관하여야 한다.</p>	<p>----- <u>조사나</u> <u>제21조의2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등 사건 심의 과정</u>--- --- <u>처리, 심의</u>--- <u>조사나 심의</u> <u>과정</u>-----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u>조사와 심의</u>----- ---</p>
--	---

○ 또한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 맞도록 조번호를 변경하였음.

□ 그 외 사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자구 수정 관련 신구 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제33조 중	<u>자</u> 에게는	<u>사람</u> 에게는
제41조제3항제3호 중	~ <u>자</u>	~ <u>사람</u>
제50조제3항제2호 중	~ <u>자</u>	~ <u>사람</u>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 등으로 확대·일원화하여 설치·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울시 구성원의 중요성 인식 및 구속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문 의 처

이정화 입법조사관 (02-2180-8146)